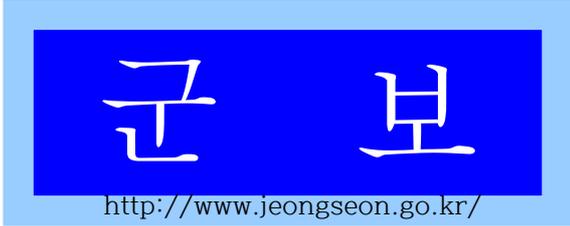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62호 2021. 4. 21.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4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1-4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1-4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6
- 정선군 고시 제2021-49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10
- 정선군 고시 제2021-54호 정선군 조동1·2리지구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1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389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공사완료 공고.....14
- 정선군 공고 제2021-393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15
- 정선군 공고 제2021-46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17
- 정선군 공고 제 2021-505호 정선군 와와정선 2층 투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 모집공고(안).....1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4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강원도고시 제2021-138호(2021.04.02.)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버스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필요 기반시설인 정비실, 휴게실 등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면적 확장

나.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57-3 일원

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가)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선읍 북실리 757-3 일원	4,580	증) 244	4,824	강고 제1985-134호 (1985.12.14.)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 면적 변경 - A = 4,580㎡ ⇒ 4,824㎡, 증) 244㎡	· 버스공영제 운영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확장 조성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
과 비치)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군 고시 제2021-4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정선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정선5일장과 아리랑센터, 아라리촌을 연결하는 중로2-8호선 선형변경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일치 시키고, 그와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임.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35-2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	20~24	보조 간선 도로	1,223	제2호광장 봉양리 34-6전	중로 1-2 애산리 582-1도	일반 도로	아리랑 테마공원	강고134호 (85.12.14)	
변경	중로	1	3	20~27	보조 간선 도로	1,223	제2호광장 봉양리 34-6전	중로 1-2 애산리 582-1도	일반 도로	아리랑 테마공원	강고134호 (85.12.14)	
기정	중로	2	8	15	보조 간선 도로	465	소로 1-20 봉양리 361-1제	소로 1-3 애산리 550-4제	일반 도로	-	정고제36호 (19.02.28)	
변경	중로	2	8	14~33	보조 간선 도로	664	소로 1-20 봉양리 361-1제	중로 1-3 애산리 535-2대	일반 도로	-	정고제36호 (19.02.28)	
폐지	중로	3	9	12	보조 간선 도로	202	중로 2-8 애산리 550-4제	중로 1-3 애산리 535-2대	일반 도로	-	정고제36호 (19.02.2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4	8	국지 도로	56	중로 3-9 애산리 531전	애산리 530-2대	일반 도로	-	정고제96호 (10.07.09)	
변경	소로	2	34	8	국지 도로	51	중로 2-8 애산리 531전	애산리 530-2대	일반 도로	-	정고제96호 (10.07.09)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1-3	중로1-3	• 폭원 증가 - B=20~24m → 20~27m	• 중로2-8호선 접속부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한 일부 폭원 증가
중로2-8	중로2-8	• 선형 변경 - B=15m → 14~33m - L=465m → 664m (증)199m	• 교량 개설과 중로3-9호선과의 합병 등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중로3-9	-	• 도로 폐지	• 도로폭원 확장과 중로2-8호선과의 합병을 위하여 도로 폐지
소로2-34	소로2-34	• 연장증가 - 오차정정 : 56m → 48m (감)8m - 금회변경 : 48m → 51m (증)3m	• 도로연장 오류 정정 및 중로2-8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접속부 변경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아리랑	문화 공원	정선읍 애산리 560 일원	40,944	감)192	40,752	강고제235호 (13.6.14)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②	아리랑 문화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차정정 : A=40,944m² → 40,865m², 감) 79m² - 금회변경 : A=40,865m² → 40,752m², 감) 11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적면적 오차정정, 중로2-8호선 변경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공원면적 감소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과 비치)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군 고시 제2021-4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기 조성된 종합운동장 내 골프연습장 조성을 통해 골프 종목의 저변 확대 등 지역내 부족한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다. 규 모 : 운동장 A=177,698.4㎡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마.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과 비치)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변경없음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운동장	종합운동장	애산리 768일원	177,698.4	-	177,698.4	강원도고시 제2008-218호 ('08.8.8)	-

다.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77,698.4	-	177,698.4	100.0	
운 동 시 설	-	70,201.0	증)7,794.0	77,995.0	44.0	
주 경 기 장	1-1	30,570.0	-	30,570.0	17.2	
보조 경기장	1-2	15,590.0	-	15,590.0	8.8	
실내체육관	1-3	5,320.0	-	5,320.0	3.0	
궁도장	1-4	5,990.0	-	5,990.0	3.4	
테니스장	1-5	7,117.0	-	7,117.0	4.0	
농구장	1-6	3,410.0	-	3,410.0	1.9	
실내야구연습장	1-7	1,185.0	-	1,185.0	0.7	
태권도연습장	1-8	1,019.0	-	1,019.0	0.6	
골프연습장	1-9	-	증)7,794.0	7,794.0	4.4	금회 신설
편 익 시 설	-	17,270.0	-	17,270.0	9.7	
주차장①	2-1	9,810.0	-	9,810.0	5.5	
주차장②	2-2	6,940.0	-	6,940.0	3.9	
주차장③	2-3	520.0	-	520.0	0.3	
광장 및 조경시설	-	74,727.4	감)7,794.0	66,933.4	37.6	
광장①	3-1	1,960.0	-	1,960.0	1.1	
광장②	3-2	2,370.0	-	2,370.0	1.3	
광장③	3-3	5,230.0	-	5,230.0	2.9	
녹지 및 기타	3-4	65,167.4	감)7,794.0	57,167.4	32.3	
교 통 시 설	-	15,500.0	-	15,500.0	8.7	
도 로	4	15,500.0	-	15,500.0	8.7	

2)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7,698.4	-	177,698.4	16,060.01	증) 637.19	16,697.20	24,529.71	증) 1,274.38	25,804.09	
소 계			70,201.0	증) 7,794	77,995.0	16,010.31	증) 637.19	16,647.50	24,462.47	증) 1,274.38	25,736.85	
운 동 시 설	1-1	주경기장	30,570.0	-	30,570.0	8,810.97	-	8,810.97	13,494.42	-	13,494.42	
	1-2	보조 경기장	15,590.0	-	15,590.0	607.50	-	607.50	721.82	-	721.82	
	1-3	실내 체육관	5,320.0	-	5,320.0	4,910.26	-	4,910.26	8,003.33	-	8,003.33	
	1-4	공도장	5,990.0	-	5,990.0	402.55	-	402.55	476.26	-	476.26	
	1-5	테니스장	7,117.0	-	7,117.0	499.77	-	499.77	987.38	-	987.38	
	1-6	농구장	3,410.0	-	3,410.0	102.06	-	102.06	102.06	-	102.06	
	1-7	실내야구 연습장	1,185.0	-	1,185.0	299.20	-	299.20	299.20	-	299.20	
	1-8	태권도 연습장	1,019.0	-	1,019.0	378.00	-	378.00	378.00	-	378.00	
	1-9	골프 연습장	-	증) 7,794	7,794.0	-	증) 637.19	637.19	-	증) 1,274.38	1,274.38	금회 신설
소 계			17,270.0	-	17,270.0	-	-	-	-	-	-	
편 의 시 설	2-1	주차장①	9,810.0	-	9,810.0	-	-	-	-	-	-	
	2-2	주차장②	6,940.0	-	6,940.0	-	-	-	-	-	-	
	2-3	주차장③	520.0	-	520.0	-	-	-	-	-	-	
소 계			74,727.4	감) 7,794.0	66,933.4	49.70	-	49.70	67.24	-	67.24	
광 장 및 조 경 시 설	3-1	광장①	1,960.0	-	1,960.0	-	-	-	-	-	-	
	3-2	광장②	2,370.0	-	2,370.0	-	-	-	-	-	-	
	3-3	광장③	5,230.0	-	5,230.0	-	-	-	-	-	-	
	3-4	녹지 및 기타	65,167.4	감) 7,794.0	57,373.4	49.70	-	49.70	67.24	-	67.24	
소 계			15,500.0	-	15,500.0	-	-	-	-	-	-	
교 통 시 설	4	도로	15,500.0	-	15,500.0	-	-	-	-	-	-	

■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골프 연습장	○ 신설 - 부지면적 : 7,794.0㎡ - 건축면적 : 637.19㎡ - 건축연면적 : 1,274.38㎡	○ 종합운동장 내 유휴지를 활용한 골프연습장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골프종목의 저변 확대 및 군민과 주변지역의 생활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제공
3-4	녹지 및 기타	○ 변경 - 부지면적 : 65,167.4㎡ → 57,373.4㎡ 감)7,794.0㎡	○ 종합운동장 내 골프연습장 신설로 인한 부지면적 감소

정선군 고시 제2021-49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20-261호(2020. 11. 20))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나. 명 칭: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신설사업(통합정수장)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11,755	<input type="checkbox"/> 수도공급설비 A=11,755㎡(구역면적) <input type="checkbox"/> 시설용량 Q=3,500㎡/일 ▪유입유량계실 A=26.98㎡ ▪착수정 A=92.43㎡ ▪혼화응집침전지 A=210.40㎡ ▪급속여과지 A=265.12㎡ ▪정수지 및 송수펌프실 A=340.40㎡ ▪슬러지처리시설 A=160.00㎡ ▪농축조, 분배조 A=59.63㎡ ▪가압장 A=25.76㎡ ▪여과지동 A=397.40㎡(연면적 A=515.09㎡) ▪정수지, 송수펌프동 A=161.97㎡(연면적 A=273.81㎡) ▪약품투입동 A=193.96㎡(연면적 A=171.95㎡) ▪농축조동 A=9.84㎡(연면적 A=44.07㎡)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로 1047)

5. 사업기간

- 1)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m ²)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1	신동읍 고성리	139	대	780	780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신동읍 고성리	140-7	도	172	6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신동읍 고성리	170-8	전	1,530	1,528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신동읍 고성리	140-12	전	4,135	1,39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신동읍 고성리	144-2	도	812	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신동읍 고성리	145-1	전	2,440	2,43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신동읍 고성리	146	대	254	25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신동읍 고성리	147	대	225	22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9	신동읍 고성리	148-1	도	46	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10	신동읍 고성리	148-3	전	4,857	4,857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11	신동읍 고성리	164-1	도	6,845	274	-	국(국토교 통부)	-	-	-
계				22,096	11,755					

정선군 고시 제2021-54호

정선군 조동1·2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정선군 조동1·2리(길운마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정선군 조동1·2리(길운마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업비 : 2,334,800천원
 - 국고 (1,583,000), 지방비(546,000), 자부담(205,800)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1·2리 일원
 - 노후주택정비
 - 슬레이트 지붕개량 24호, 빈집철거 22호, 집수리 52호
 - 안전·위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 길운천 제방정비(L=150m), 통행로 안전확보(옹벽 L=140m), 안전확보(태양광가로등 16개소, 소화전 2개소, CCTV 1개소), 소규모주차장조성 2개소, 도보교 조성(L=25m), 재래식화장실 정비 6개소, 노후급수관정비(L=189m)

- 배수로정비(236m), 안전확보(보안등 23개소, 가로등 13개소, 소화전 4개소), 문화복지공간 조성(복지회관 225㎡), 조동7리 경로당 지붕개선(104㎡), 커뮤니티센터 조성(근현대역사마을 일부 리모델링 99㎡)

○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시설 정비

- 길운 커뮤니티공간 조성(리모델링 167㎡), 조동2리 경로당 리모델링(116㎡), 분리수거장 조성 2개소, 마을취약지역 정비(담장보수 45m, 취약지역환경개선 1식)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휴먼케어(문화여가활동 및 드라이플라워 전문가 양성) 1식,
- 주민역량강화(선진지 견학) 1식

5.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6.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4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 033-56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389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공사완료 공고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3-1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나. 명 칭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사업(야구장)
- 3. 사업의 면적 (금회시행)
 - 가. 면 적 : A=13,458㎡(야구장 조성)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문화관광과)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 5. 사업기간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 공 일 : 2020. 12. 20

정선군 공고 제2021-393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 1. 정선군 고시 제2003-41호(2003. 5. 09)로 최초 결정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9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2-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 사업
- 2) 명 칭: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 개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금회시행	
도로	소로 2-14호선	L=256m, B=8.0~10.0m	L=256m, B=8.0~10.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주식회사 선(대표이사 노상균)
- 2) 주 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공람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2021. 4. 09. ~ 2021. 4. 23.)

사. 공람장소: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1	정선읍 봉양리	919-5	제	271	139		국(건설부)	-	-	-
2	정선읍 애산리	432-504	도	196	197		정선군	-	-	-
3	정선읍 애산리	432-505	대	858	22		정선군	-	-	-
4	정선읍 애산리	592-11	제	2,142	1,665		국(건설부)	-	-	-
5	정선읍 애산리	592-3	대	794	8		정선군	-	-	-
6	정선읍 애산리	592-4	대	1,416	12		정선군	-	-	-
7	정선읍 애산리	592-8	대	2,676	8		정선군	-	-	-
8	정선읍 애산리	592-9	장	3,450	122		정선군	-	-	-
9	정선읍 애산리	432-358	도	4,048	33		정선군	-	-	-
계				15,851	2,206					

정선군 공고 제2021-46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장열리 일원
3. 규 모 : 도로 신설 3개소, 변경 1개소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21. 4. 20. ~ 2021. 5. 06.)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북평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 2021-505호

정선군 와와정선 2층 투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 모집공고(안)

주요 관광지를 기점으로 하는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정 선 군 수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정선군 와와정선 2층 투어버스 사업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

나. 모집업체 : 1개 업체

다. 운송사업 내용

사업의 종류 (운행노선)	운송사업구역	운행 대수	운행 횟수	업체 선정	운행거리 (km)
정선군 와와정선 2층 투어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정선읍 - 진부역 - 파크로쉬 리조트 - 로미지안 가든 - 정선아리랑시장 - 나전역 - 아우라지 - 정선아리랑시장 - 로미지안 가든 - 파크로쉬 리조트 - 진부역	1대	1회	1	120

※ 세부노선, 운행횟수 및 배차시간 등은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라. 면허기간 : 면허일로부터 5년(면허갱신에 따라 추가연장 가능)

마. 운행방법 및 차량 : 주요 관광지를 기점으로 천정개방 2층버스 순환

바. 운 임 : 1인 구간 이용 5,000원 / 1인 전일 이용 10,000원

사. 보조금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면허접수 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통사항(법인, 단체, 개인)

공고일 현재 정선군 관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내 소재를 둔 업체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천정개방 2층버스 운영이 가능한 업체

- 2) 단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자
 - 3) 개인 :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 나) 20세 이상으로서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버스운전자 양성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준용

나. 면허신청서 제출기간 및 장소

- 1) 신청서 제출기간 : 2021. 4. 20.(화) ~ 4. 26.(월)
 - ※ 접수시간 : 09:00 ~ 18:00
- 2) 접수장소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560-2366)
- 3) 접수방법 : 방문 제출하되,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다. 면허신청 구비서류

- 1) 공통사항(법인, 단체, 개인)
 -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나) 차고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다) 사업계획서
- 2) 법인 또는 단체
 - 가)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 나)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 3) 개 인
 - 가) 운전경력증명서(대표자 인감증명 첨부) 1부.
 - 나)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제시) 1부.
 -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라) 주민등록등본 1통.
 - 마) 건강진단서 1부.
 - 바) 반명합판 사진(3.5cm × 4.5cm) 2매.

3.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및 방법

- 1) 제1차 : 서류심사(서류검토 및 관련법규 자격여부 심사)
- 2) 제2차 : 면접 및 평가(필요시 1차 서류심사 통과자)
- 3) 신청서 접수 및 한정면허 발급
- 4) 단, 1개 업체만 신청할 시, 평가항목 심사는 제외하고 결격사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격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 가능

나. 운송사업자 한정면허 발급 우선순위

우선순위	자 격	비 고
1순위	○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 - 2개 업체 이상 경합시 심사위원회 평가 후 선정	기존운송사업자, 법인, 단체
2순위	○ 오자도서교통지원사업(공영버스 또는 도선 운송사업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개인 신청자	개인
3순위	○ 기타 개인신청자	개인

※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은 “운송사업자 한정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 시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유경험자(법인 또는 단체 포함)를 우선 하되,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필요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동일 우선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등급			
			S	A	B	C
계		100				
준법운영	인가대수 대비 행정처분 건수	30	30	24	18	12
안전운영	인가대수 대비 교통사고발생률	30	30	24	18	12
복리후생	운수종사자 이직율(평균 재직기간)	20	20	16	12	8
기타 정성평가	투명경영 노력도, 고객만족도 및 환경개선도, 기타 운송사업 차별 화 방안 등	20	20	16	12	8

4.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기재의 미비·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나.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 서류(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 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납세실적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대표자가 발급하여야 하며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의 확인 등에 의한 경력증명은 무효입니다.
- 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위·변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 면허를 취소합니다.
- 라. 본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국토교통부훈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강원도의 각종 지침(지시)등에 의하여 정선군수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합니다.
- 마. 기타 상세 내용은 정선군 안전과 교통행정팀(☎ 560-23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신청서(서식)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서(서식) 1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영형태:)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영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1. 주사무소 현황

업체명	건물명	위치(주소)	비고

※ 주사무소 확보현황 증빙서류 제출

2. 대표자 현황

연번	직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본적지	비고

3. 현재 차고지 위치 및 수용능력

차고지명	소재지	수용능력 (확보된 면적)	수용대수 (대당 23㎡)	비고

※ 증빙서류 제출

4. 현재 보유차량 현황

연번	자동차의종류	승차인원	형식	등록일	비고
					은행차량 예비차량 구분 표기

5.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구 분	소재지	수용능력(m ²)	자가.임대 표시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및 부대시설			
세차장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시설			

<정량평가 항목>

6.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연 도	과징금	과태료	종사자 자격취소	합계	비고
2019년					
2020년					

※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자료 미제출시 해당평가분야 최저등급 부여

7. 운수종사자(버스기사) 재직 현황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도	재직기간	비고
〇〇〇	751234	2019.1.1	2.3년	
〇〇〇	751234	2019.1.1	2.3년	
합계		종사자 00명	평균 00년	

- ※ 증빙서류(종사자별 재직재직기간 확인 가능 자료, 총 운수종사자 확인가능 자료 등) 제출
- ※ 미제출시 해당평가분야 최저등급 부여

8. 교통사고 발생 현황

연 도	경상	중상	사망	합계	비고
2019년					
2020년					

※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정성평가 항목>

9. 투명경영을 위한 방안 및 민주적 경영을 위한 노력

- 가. 투명경영을 위한 방안
- 나. 합리적 노사관계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위한 방안

10. 안전운행 및 준법운행

- 가. 운수종사자 관리 및 교육계획
- 나. 운행질서 확립 계획

11. 고객만족도 제고 및 환경개선

- 가.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방안
- 나. 이산화탄소 절감 등 환경개선 방안

12. 기타 운송사업 차별화 및 서비스 향상 방안

※ 버스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지역사회 공헌계획 등

2021.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의 사업신청부터 선정완료시까지 정선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정선군수 귀하